

2020 KIDP  
Guide for  
Standard  
Design  
Service Agreement



2020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산업통상자원부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2020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Guide for Standard Design  
Service Agreement

제품디자인  
성과배분형(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



산업통상자원부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2020

한국디자인진흥원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Guide for Standard Design  
Service Agreement

제품디자인

성과배분형(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사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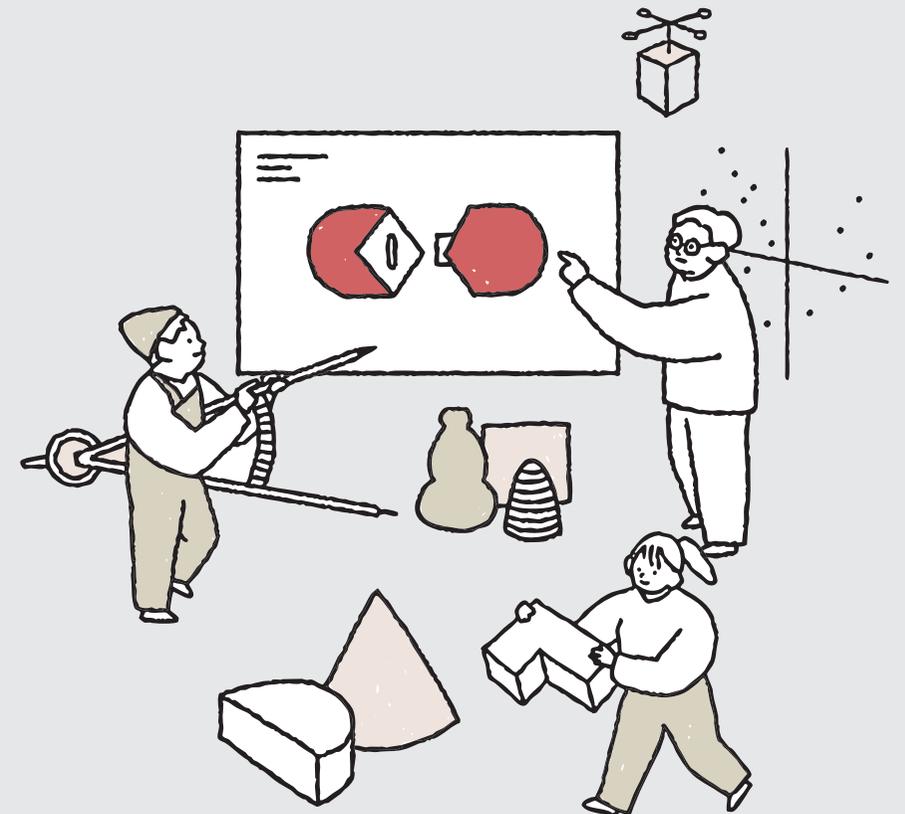
1.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의사 표시 사이에 이뤄지는 합치(합의)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며, 구두로 합의한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이를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작성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추궁할 근거가 없어지거나 약해진다. 그래서 계약(합의)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는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이행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계약 종료 단계에서는 계약의 파기나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디자인표준계약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경험이 있더라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기업(공급자)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삽입되는 표준 계약 조항을 담아 만든 계약서이다. 디자인표준계약서 내의 세부내용은 권장사항이거나 예시일 뿐 반드시 그대로 작성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하면 된다. (계약내용 협의 시 갑을관계가 작용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는데, 공급자는 협상기술을 발휘하여 원하는 내용을 최대한 담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수요자는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공급자는 용역 수행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3. 디자인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체크포인트

1. 용역의 범위(개발 세부내역)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했는가?
2. 용역의 범위에 상응하는 대금과 지급방법을 기재했는가?
3. 용역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대금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기재했는가?
4.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와 횟수 및 그에 대한 수요자의 회신 기한에 대해 기재했는가?
5. 용역 완성 후 수요자에게 제공할 최종결과물 내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했는가?
6. 중간결과물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에 관해 기재했는가?
7.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에 관해 기재했는가?
8. 수요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또는 중단) 시 수요자의 책임에 대해 기재했는가?
9. 작성일자과 서명(또는 기명) 날인은 정확히 했는가?
10. 첨부내역(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은 확인했는가?

#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하‘수요자’)가 ○○○(이하‘공급자’)에게 발주한 “○○디자인 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해 인도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관련법을 따른다.  
 ① 디자인 관련 용어: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적용한다.

② 기타 용어: 상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해석이 다를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제3조 계약금액**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매우 중요**

- ② 수요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 선금금: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도금(필요시): [ ]완성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잔금: 최종결과물 검수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종결과물: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상의 ( )을 특정하며, 잔금지급, 완료검사 및 인수, 지식재산권 귀속, 실적증명 목적으로의 사용 등의 기준이 됨.

-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④ 본 계약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참고해 정한다.  
 ⑤ 제4항에 명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상의 비용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 )가 있을 경우, 그 산정기준은 ( )을 참고한다.

▪ 제1항은 계약금액을 기재한 조항이다. 숫자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2항은 계약금액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기재한 것인데, 이는 예시이므로 당사자들이 협의해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현금지급, 계좌이체, 어음교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독촉하는 것이 좋다. 통상 잔금은 최종결과물 검수(완료검사)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잔금을 지급 받으면 제8조에 따라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귀속·양도됨을 유념한다.

- 제3항의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는 연 6%다. 이보다 고율의 지연이자를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예시**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 산정에 관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은 좋은 참고가 된다.
- 제4항의 위치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둘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데 대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예시**  
 ④ 수요자가 제②항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가 지급을 지연한 때부터 지급을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4조 비용정산

**매우 중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공급자는 합당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비용정산해 청구한다.

비용 정산 별도 청구 사항 (※해당  안에 )  
 모형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기타( )

-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다. 제3조의 계약금액은 순수한 디자인 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역 수행 중 모형 제작, 샘플 제작, 이미지 대여, 사진 촬영, 소품, 인쇄, 출장 등과 관련한 비용은 디자인 비용 외에 수요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4조는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수요자는 당초 약정한 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의 수행을 요구하고 이를 기존 계약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제3조의 계약금액이 적용되는 아래 제5조의 용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내용)도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내용)를 나열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부분에 “등”을 삽입함으로써 나열하는 것 외에도 비용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
- 비용산출의 기준도 미리 정해놓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예시**  
 ▪ 제4조(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등)은 정산해 별도로 청구한다. 단, 비용을 산정할 때 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이미지 대여비, 사진 촬영비, 소품비, 인쇄비의 경우는 외주비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장 여비 및 기타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매우 중요

- ①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결과물 (※해당 <input type="checkbox"/> 안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디자인 기획	<input type="checkbox"/> 시장조사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아이디어 발굴	<input type="checkbox"/> 아이디어 스케치, <input type="checkbox"/> 아이디어 PT, <input type="checkbox"/> 기타( )
렌더링/모델링	<input type="checkbox"/> 3D렌더링 ( )종, <input type="checkbox"/> CMF가이드라인, <input type="checkbox"/> 3D모델링 ( )종, <input type="checkbox"/> 기타( )
디자인 목업	<input type="checkbox"/> 확정 시안에 대한 목업 ( )종,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타 사항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사용성 평가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용역의 범위와 결과물은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이는 단순하게 몇 줄로 작성할 일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재 내용이 상세할수록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공급자가 수행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계약상의 용역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 제1항의 ‘개발세부내역 및 견적서’에서는 개발 세부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수요자에게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 개수, 제공 방법(이메일 또는 실물 교부 등), 중간결과물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회신 기한 등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수요자의 의견 회신이 늦어져 용역의 완료가 지체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본문이나 별첨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에 추가해도 좋다.

**예시**

- 공급자가 제공한 중간결과물에 대해 수요자가 [ ]일 이내에 의견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된 기간은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2항의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내역과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제6조  
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매우 중요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수요자가 용역의 범위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구두를 통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잦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말을 믿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로 용역을 수행했지만 수요자는 변경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용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제7조  
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매우 중요

- 제2항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 용역량이 증가한 경우 추가계약금액을 청구하라는 규정이다.
- 만약 수요자가 당사자간 서면 작성을 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금액도 산정해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수요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나중에 용역의 범위, 계약금액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① 공급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 ②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③ 수요자는 검사 결과 최종결과물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이를 자체 없이 수행하고 수요자에게 결과물을 납품해 다시 수요자의 검사를 받는다.
  2.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합의해 수요자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한다.

- 용역의 완료검사(검수)를 마쳐야 공급자의 용역이행의무가 종료된다. 공급자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반드시 완료검사를 요청한다는 근거를 남기고,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통과했다는 의사도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전달 받아야 한다.
- 제1항은 “최종결과물에 대한 완료검사”의 뜻을 명기해 요청하라는 규정이다.
- 제2항의 검사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즉, 7일이나 10일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3항은 검사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규정이다.

**제8조  
지식재산권 귀속 등**

매우 중요

- ①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 ③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본 계약 제5조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최종결과물을 제외한 스케치, 렌더링 등)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수요자가 디자인 시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중간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때에는 비용 지급을 포함해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 이 역시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이므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제1항은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임을 선언한 규정이다.
- 제2항을 통해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때에 수요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했으므로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지식재산권이 공급자에게 있음을 유념한다.

- 제3항은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고, 그러한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추가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갖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용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제3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예시**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제9조  
손해배상**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② 제7조에 의한 완료검사 후 최종결과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 제2항은 최종결과물이 인도되고 완료검사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더 이상 공급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이후에 최종결과물에 발생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라는 취지이다.
- 제3항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손해배상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제출하라는 취지의 규정인데,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손해액의 증명이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다음 예시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예시**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사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즉,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용역 이행을 대신하도록 할 수 없다.

**제11조  
비밀의 유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한 날로부터 ( )개월/년 이후부터는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 제1항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비밀에 대한 유지 의무를 선언한 규정이다.
- 제2항은 공급자가 결과물을 실적 증명 목적으로 공개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와 합의한 비밀유지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수요자의 공개 후에 공급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요자의 공개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제3항은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가 계약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속적으로 유효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비밀유지 의무를 제한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예시**

③ 제1항의 이행의무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 3년간 존속한다.

- 제3항 후단의 손해배상 부분은 제9조 제3항에 대한 설명과 같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명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후단 부분만 변경하는 것임)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금 0000원을 배상한다.

**제12조  
자료의 제공 및  
반환**

-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수요자가 제공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요자의 의무와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잘 보관하고 용역이 종료되면 이를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공급자의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다.
- 계약 후 디자인 과정에서 수요자가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연해 용역수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용역수행이 지연되더라도 공급자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전달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자료전달 지연 사실 및 그로 인한 용역수행 지연을 수요자에게 명백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해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해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④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용역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제외한 계약금액 전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해 지급한다.

- 일반적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규정이다. 특별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추가하고 싶다면 당사자간 협의해 추가할 수 있다.
- 제1항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독촉(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제2항은 계약이행에 대한 최고 후 14일이 지나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14일의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지 또는 해제 날짜가 명확해지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시기도 명확해진다.
- 제3항은 해제,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역시 제9조 제3항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제9조 제3항의 설명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고[예시1], 기수령한 계약금액 또는 잔여 계약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할 수도 있다[예시2].

**예시 1**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예시 2**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수요자가 배상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계약금액 중 잔여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배상하는 경우에는 기수령한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4항은 수요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용역수행이 중단 또는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한 규정이다. 첫 부분은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와 같은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요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공급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기성고에 비례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 이와 달리 공급자가 계약금액을 받고 싶다면 수요자와 협의해 수정하면 된다.

**제14조**  
**지체상금**

-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성실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수요자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한 경우: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용역 이행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 계약기간을 경과해 용역을 완료한 경우: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에서 지체상금 비율 1.25/1000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이다. 이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지체상금의 한도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예컨대 계약금액이 1억 원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에서 10일간 지체한 경우 위 표준계약서 조항대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지체일수 10일 × 계약금액 1억 원 × 1.25/1,000 = 1,250,000원]
- 제2항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공급자는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제3항은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항이다.

**제15조  
불가항력**

수요자와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 3항에 의해 설치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 제기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다.

- 모든 분쟁은 합의 아니면 소송에 의해 해결된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여의치 않은 경우 그 해결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은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다.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쌍방의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비용, 시간,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 경제적이므로 적극 권장한다. 분쟁 발생 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가장 먼저 거치고 싶다면 제1항의 끝 부분을 “거칠 수 있다”에서 “거친다”로 변경하면 된다.
- 제2항에서 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소를 제기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에서는 소 제기자의 편의를 위해 소 제기자와 상대방 모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제17조  
통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이를 통지해야 한다.
-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 제1항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알림, 요구, 요청, 의사전달 등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 제2항은 위와 같은 통지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고, 주소 변경도 통지하라는 조항이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입게 되는 불이익은 제3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다. 우편으로 통지할 경우 추후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날짜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효력은 없다.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따져보라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답장을 해야 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계약금액의 지급을 독촉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의 강한 의지를 인지하고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는 것을

기피함으로써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이 회신하는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 그러나 모든 통지를 우편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 예시**
-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3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다만, 제2항을 위 예시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항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 예시**
-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 이메일, 휴대전화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 상대방과 교환한 구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제18조  
상호합의**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해 정하기로 한다.
-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 제1항은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기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하라는 조항이다. 계약 용어에 ‘합의’와 ‘협의’가 있는데, 전자는 의사의 일치에 이르러야 합을 일컫고, 후자는 의논만 하면 충분하고 의사의 일치에 이르지 않아도 됨을 일컫는다. ‘협의’라고 규정하면 권리자가 의논만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 제2항은 혹시 다른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제19조  
기타**

- ①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또는 서명) 날인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② 본 계약에 수반한 합의서, 문서 등 모든 첨부 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별도의 합의서는 본 계약에 우선한다.

-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용역과 관련해 별도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제2항은 이때 이 계약과 별도 합의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합의(계약)가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했다고 판단하므로 여기에 우선적인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 착으로 표지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이 조 제3항에 추가할 수 있음은 표지 부분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 성과배분형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성과배분형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용역 완료 후 수요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면 해당 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수령이 종료된다. 이와 같은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또는 계약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디자인한 제품의 추후 판매실적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는데, 이를 성과배분형 계약이라 한다. 영화배우가 영화에 출연하면서 기본 출연료를 받고, 나중에 흥행성적(통상 관객수)에 비례해 추가로 출연료를 받는, 이른바 러닝 개런티(running guarantee)와 유사하다. 디자인 결과물에 자신이 있거나 수요자가 계약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과감하게 일시금으로 받는 계약금액을 낮추거나 생략하고 수요자와 합의해 성과배분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하‘수요자’)가 ○○○(이하‘공급자’)에게 발주한 “○○디자인 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해 인도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배분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관련법을 따른다.  
 ① 디자인 관련용어 :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등을 적용한다.  
 ② 기타 용어 : 상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에 해석이 다를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제3조 계약금액** 매우 중요

① 본 계약에 의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 선금금 :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도금(필요시) : [    ]완성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잔금 : 최종결과물 검수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종결과물 :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상의 (                    )을 특정하며, 잔금지급, 완료검사 및 인수, 지식재산권 귀속, 실적증명 목적으로의 사용 등의 기준이 됨.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④ 본 계약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참고해 정한다.  
 ⑤ 제4항에 명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상의 비용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                    )가 있을 경우, 그 산정기준은 (                    )을 참고한다.

- 제1항은 계약금액을 기재한 조항이다. 숫자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2항은 계약금액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기재한 것인데, 이는 예시이므로 당사자들이 협의해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현금지급, 계좌이체, 어음교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제18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독촉하는 것이 좋다. 통상 잔금은 최종결과물 검수(완료검사)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잔금을 지급 받으면 제9조에 따라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귀속·양도됨을 유념한다.
- 제3항의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는 연 6%다. 이보다 고율의 지연이자를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예시**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 산정에 관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은 좋은 참고가 된다.
- 제4항의 위치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둘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데 대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예시**  
 ④ 수요자가 제2항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가 지급을 지연한 때부터 지급을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15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4조 비용정산

매우 중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하며, 공급자는 합당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비용정산해 청구한다.

비용 정산 별도 청구 사항 ( ※해당  안에 ✓ )  
 모형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기타(                    )

-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다. 제3조의 계약금액은 순수한 디자인 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역 수행 중 모형 제작, 샘플 제작, 이미지 대여, 사진 촬영, 소품, 인쇄, 출장 등과 관련한 비용은 디자인 비용 외에 수요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4조는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수요자는 당초 약정한 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의 수행을 요구하고 이를 기존 계약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제3조의 계약금액이 적용되는 아래 제6조의 용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내용)도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내용)를 나열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부분에 “등”을 삽입함으로써 나열한 것 외에도 비용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
- 비용산출의 기준도 미리 정해놓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제5조**  
**성과배분**  
**매우 중요**

**예시**

▪ 제4조(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등)은 정산해 별도로 청구한다. 단, 비용을 산정할 때 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이미지 대여비, 사진 촬영비, 소품비, 인쇄비의 경우는 외주비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장 여비 및 기타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 ① 수요자는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액 외에 용역에 따른 성과를 배분한다.
- ② 성과배분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 중에 협의해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정한다.
  1. 수요자의 매출수량, 매출금액 기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산출하고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2. 수요자의 상품화 등 허락 기준: 다음의 지역(예시: 대한민국)과 상황(예시: 온라인 판매)에 대해 제조, 상품화, 배급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③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성과배분 산정방법에 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고, 수요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④ 제3항의 자료의 제공은 공급자의 검증을 요청한 서면이 수요자에게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 ⑤ 제2항에 의한 성과배분 산정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조문으로 정할 수 있다.

**성과배분 산정 방법**

수량 기준 ※해당 □ 안에 ✓	<input type="checkbox"/> 제품 출하 수량 ( )개까지는 일 개당 ( )원
	<input type="checkbox"/> 누적 출하 수량 ( )개 이상은 일 개당 ( )원
금액 기준 ※해당 □ 안에 ✓	<input type="checkbox"/> 제품 개발 후 누적 출하(판매) 금액 ( )원까지는 출하(판매) 금액의 ( )%
	<input type="checkbox"/> 제품 개발 후 누적 출하(판매) 금액 ( )원을 초과할 때부터는 초과한 금액의 ( )%
상품화 허락 (지식재산권) ※해당 □ 안에 ✓	지역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구분 <input type="checkbox"/> 독점적 권리, <input type="checkbox"/> 비독점적 권리
	실시 (허락)사항 <input type="checkbox"/> 생산,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양도, <input type="checkbox"/> 대여, <input type="checkbox"/> 수출/수입, <input type="checkbox"/> 청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협의 사항**

- ① 출하수량은 「부가가치세법」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단위당 판매단가 등을 적용해 산출해 제5조제2항의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제2항의 출하수량 통지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이 확정된 분기의 수량으로 간주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상품화의 조건은 별도의 문서를 첨부해 작성한다.
- ④ 만약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제8조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전용실시권(또는 통상실시권)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제3조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계약금액만을 규정하고 있다.
- 제1항은 그 외에 수요자로부터 성과에 따른 계약금액을 지급 받게 됨을 선언한 조항이다.
- 제2항은 성과배분의 산정방식에 관해 설명한 조항이다. 통상 매출수량, 매출금액, 상품화 등 허락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거나 혼합해 산정한다. 1호와 2호는 예시이고, 그 중 당사자가 선택한 방식을 기재하면 된다. 예시이므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협의해 정한다. 예시와 달리 매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산정해 지급할 수도 있다. 출하(판매)수량에 따라 매월 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예시**

- ② 성과배분의 산정은 수요자의 출하(판매)수량을 기준으로 매월 산출해 다음달까지 지급한다. 상세한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 제3항과 제4항은 성과배분 산정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산정방식을 검증할 수 있고, 수요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조항이다.
- 제5항 다음의 표는 여러 가지 산정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그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혼합산정방법의 경우)을 선택해 기재하면 된다.
- 상품화 허락은 예컨대 ‘둘리’나 ‘뽀로로’ 같은 캐릭터의 권리자가 타인에게 그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판매지역, 유통경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상품화하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릭터 권리자가 캐릭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등록하거나 캐릭터 권리자로부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등록해야 한다. 협의사항 ④는 이를 권장하는 규정이다.
- 제품디자인에 대해 출하(판매)수량이나 출하(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해 성과배분을 약정하는 경우 판매수량이나 판매금액을 정확히 산정했는지 여부가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된다. 수요자의 판매수량이나 판매금액에 대한 자료제공을 믿을 수 없고, 그와 관련한 다툼을 피하고 싶다면, 공급자는 아예 수요자에게 제공한 디자인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공급자는 최종결과물을 인도하고, 일시금인 계약금액을 받음으로써 지식재산권까지 모두 양도한 후 수요자로부터 다시 상품화 허락을 받아 그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해 성과배분을 받는 것이다. 이때 상세한 조건은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첨부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협의사항 ③ 참조).
- 협의사항 중 ①과 ②는 제2항 제1호에서 예시한 분기 단위 산출 방식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월 단위, 연 단위 등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했다면 그에 맞춰 변경하면 된다.

**제6조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매우 중요

- ①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결과물 (※해당 <input type="checkbox"/> 안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디자인 기획	<input type="checkbox"/> 시장조사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아이디어 발굴	<input type="checkbox"/> 아이디어 스케치, <input type="checkbox"/> 아이디어 PT, <input type="checkbox"/> 기타( )
렌더링/모델링	<input type="checkbox"/> 3D렌더링 ( )종, <input type="checkbox"/> CMF가이드라인, <input type="checkbox"/> 3D모델링 ( )종, <input type="checkbox"/> 기타( )
디자인 목업	<input type="checkbox"/> 확정 시안에 대한 목업 ( )종,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타 사항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사용성 평가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용역의 범위와 결과물은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이는 단순하게 몇 줄로 작성할 일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재 내용이 상세할수록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공급자가 수행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계약상의 용역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 제1항의 ‘개발세부내역 및 견적서’에서는 개발 세부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수요자에게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 개수, 제공 방법(이메일 또는 실물 교부 등), 중간결과물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회신 기한 등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수요자의 의견 회신이 늦어져 용역의 완료가 지체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5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본문이나 별첨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에 추가해도 좋다.

**예시**

▪ 공급자가 제공한 중간결과물에 대해 수요자가 [ ]일 이내에 의견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된 기간은 제15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2항의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내역과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제7조  
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매우 중요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수요자가 용역의 범위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구두를 통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잦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말을 믿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로 용역을 수행했지만 수요자는 변경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용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 제2항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 용역량이 증가한 경우 추가계약금액을 청구하라는 규정이다.
- 만약 수요자가 당사자간 서면 작성을 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제18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금액도 산정해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수요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나중에 용역의 범위, 계약금액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8조  
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매우 중요

- ① 공급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 ②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③ 수요자는 검사 결과 최종결과물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이를 지체 없이 수행하고 수요자에게 결과물을 납품해 다시 수요자의 검사를 받는다.
  2.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합의해 수요자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한다.

- 용역의 완료검사(검수)를 마쳐야 공급자의 용역이행의무가 종료한다. 공급자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할 때에는 제18조의 통지방법으로 반드시 완료검사를 요청한다는 근거를 남기고,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통과했다는 의사도 제18조의 통지방법으로 전달 받아야 한다.
- 제1항은 “최종결과물에 대한 완료검사”의 뜻을 명기해 요청하라는 규정이다.
- 제2항의 검사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즉, 7일이나 10일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3항은 검사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규정이다.

**제9조  
지식재산권 귀속 등**

매우 중요

- ①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 ③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본 계약 제5조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최종결과물을 제외한 스케치, 렌더링 등)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수요자가 디자인 시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중간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때에는 비용 지급을 포함해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 이 역시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이다.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제1항은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임을 선언한 규정이다.

- 제2항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때에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지식재산권이 공급자에게 있음을 유념한다.
- 제3항은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고, 그러한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추가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갖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용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제3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예시**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제10조  
손해배상**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② 제8조에 의한 완료검사 후 최종결과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 제2항은 최종결과물이 인도되고 완료검사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더 이상 공급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이후에 최종결과물에 발생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라는 취지이다.
- 제3항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손해배상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제출하라는 취지의 규정인데,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손해액의 증명이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다음 예시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예시**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사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용역의 이행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

-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사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용역의 이행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  
비밀의 유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한 날로부터 ( )개월/년 이후부터는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 제1항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비밀에 대한 유지 의무를 선언한 규정이다.
- 제2항은 공급자가 결과물을 실적 증명 목적으로 공개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와 합의한 비밀유지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수요자의 공개 후에 공급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요자의 공개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제3항은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가 계약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속적으로 유효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비밀유지 의무를 제한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예시**

③ 제1항의 이행의무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 3년간 존속한다.

- 제3항 후단의 손해배상 부분은 제10조 제3항에 대한 설명과 같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명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후단 부분만 변경하는 것임)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금 0000원을 배상한다.

**제13조**  
**자료의 제공 및**  
**반환**

-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수요자가 제공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요자의 의무와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잘 보관하고 용역이 종료되면 이를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공급자의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다.
- 계약 후 디자인 과정에서 수요자가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연해 용역수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용역수행이 지연되더라도 공급자는 제15조에서 규정한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전달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제18조의 통지방법으로 자료전달 지연 사실 및 그로 인한 용역수행 지연을 수요자에게 명백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된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해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해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④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용역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중지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일반적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규정이다. 특별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추가하고 싶다면 당사자간 협의해 추가할 수 있다.
- 제1항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독촉(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제2항은 계약이행에 대한 최고 후 14일이 지나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14일의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지 또는 해제 날짜가 명확해지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시기도 명확해진다.

- 제3항은 해제,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역시 제9조 제3항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제9조 제3항의 설명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고[예시1], 기수령한 계약금액 또는 잔여 계약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할 수도 있다[예시2].

**예시 1**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예시 2**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귀책 주체별로 수요자는 제3조에 의한 계약금액 중 잔여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공급자는 기수령한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 제4항은 수요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용역수행이 중단 또는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한 규정이다. 첫 부분은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와 같은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요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공급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기성고에 비례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 이와 달리 공급자가 계약금액을 받고 싶다면 수요자와 협의해 수정하면 된다.

**제15조**  
**지체상금**

-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성실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한 경우: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용역 이행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해 용역을 완료한 경우: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에서 지체상금 비율 1.25/1000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이다. 이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지체상금의 한도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예컨대 계약금액이 1억 원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에서 10일간 지체한 경우 위 표준계약서 조항대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지체일수 10일 × 계약금액 1억 원 × 1.25/1,000 = 1,250,000원]
- 제2항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공급자는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제3항은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항이다.

**제16조 불가항력**

수요자와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 3항에 의해 설치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 제기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다.

- 모든 분쟁은 합의 아니면 소송에 의해 해결된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여의치 않는 경우 그 해결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은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다.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쌍방의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비용, 시간,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 경제적이므로 적극 권장한다. 분쟁 발생 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가장 먼저 거치고 싶다면 제1항의 끝 부분을 “거칠 수 있다”에서 “거친다”로 변경하면 된다.
- 제2항에서 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소를 제기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에서는 소 제기자의 편의를 위해 소 제기자와 상대방 모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제18조 통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이를 통지해야 한다.
-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 제1항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알림, 요구, 요청, 의사전달 등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 제2항은 위와 같은 통지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고, 주소 변경도 통지하라는 조항이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입게 되는 불이익은 제3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다. 우편으로 통지할 경우 추후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날짜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효력은 없다.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따져보라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답장을 해야 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계약금액의 지급을 독촉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의 강한 의지를 인지하고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는 것을 기피함으로써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이 회신하는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 그러나 모든 통지를 우편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예시**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3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다만, 제2항을 위 예시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항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예시**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 이메일, 휴대전화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 상대방과 교환한 구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제19조**  
**상호합의**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해 정하기로 한다.
-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 제1항은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기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하라는 조항이다. 계약 용어에 ‘합의’와 ‘협의’가 있는데, 전자는 의사의 일치에 이르러야 함을 일컫고, 후자는 의논만 하면 충분하고 의사의 일치에 이르지 않아도 됨을 일컫는다. ‘협의’라고 규정하면 권리자가 의논만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 제2항은 혹시 다른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제20조**  
**기타**

- ①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또는 서명) 날인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② 본 계약에 수반한 합의서, 문서 등 모든 첨부 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별도의 합의서는 본 계약에 우선한다.

▪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용역과 관련해 별도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제2항은 이때 이 계약과 별도 합의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합의(계약)가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했다고 판단하므로 여기에 우선적인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 착오로 표지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이 조 제3항에 추가할 수 있음은 표지 부분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하‘수요자’)가 ○○○(이하‘공급자’)에게 발주한 “○○디자인 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해 인도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관련법을 따른다.  
 ① 디자인 관련용어: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적용한다.

② 기타 용어: 상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에 해석이 다를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제3조 계약금액** 매우 중요

① 본 계약에 의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 선금: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도금(필요시): [    ]완성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잔금: 최종결과물 검수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종결과물: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상의 (    )을 특정하며, 잔금지급, 완료검사 및 인수, 지식재산권 귀속, 실적증명 목적으로의 사용 등의 기준이 됨.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④ 본 계약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참고해 정한다.  
 ⑤ 제4항에 명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상의 비용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                    )가 있을 경우, 그 산정기준은 (                    )을 참고한다.

- 제1항은 계약금액을 기재한 조항이다. 숫자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2항은 계약금액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기재한 것인데, 이는 예시이므로 당사자들이 협의해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현금지급, 계좌이체, 어음교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독촉하는 것이 좋다. 통상 잔금은 최종결과물 검수(완료검사)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잔금을 지급 받으면 제8조에 따라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귀속·양도됨을 유념한다.

- 제3항의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는 연 6%다. 이보다 고율의 지연이자를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예시**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 산정에 관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은 좋은 참고가 된다.
- 제4항의 위치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둘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데 대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예시**

④ 수요자가 제②항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가 지급을 지연한 때부터 지급을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조 비용정산** 매우 중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하며, 공급자는 합당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비용정산해 청구한다.

비용 정산 별도 청구 사항 (※해당  안에 )

모형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제3자 창작물 사용료,  
 스튜디오 사용료,  모델료,  기타(                    )

-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다. 제3조의 계약금액은 순수한 디자인 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역 수행 중 모형 제작, 샘플 제작, 이미지 대여, 사진 촬영, 소품, 인쇄, 출장 등과 관련한 비용은 디자인 비용 외에 수요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4조는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수요자는 당초 약정한 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의 수행을 요구하고 이를 기존 계약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제3조의 계약금액이 적용되는 아래 제5조의 용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내용)도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내용)를 나열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부분에 “등”을 삽입함으로써 나열하는 것 외에도 비용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
- 비용산출의 기준도 미리 정해놓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예시**

▪ 제4조(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등)은 정산해 별도로 청구한다. 단, 비용을 산정할 때 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이미지 대여비, 사진 촬영비, 소품비, 인쇄비의 경우는 외주비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장 여비 및 기타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매우 중요

- ①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결과물 (※해당 <input type="checkbox"/> 안에 ✓)	
디자인 기획	<input type="checkbox"/> 시장조사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아이디어 발굴	<input type="checkbox"/> 아이디어 스케치, <input type="checkbox"/> 아이디어 PT, <input type="checkbox"/> 기타( )
디자인 제작	<input type="checkbox"/> 시안제작 ( )종, <input type="checkbox"/> 세부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이드 제작	<input type="checkbox"/> 이미지 구축, <input type="checkbox"/> 스타일링 가이드,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타 사항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사용성 평가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용역의 범위와 결과물은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이는 단순하게 몇 줄로 작성할 일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재 내용이 상세할수록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공급자가 수행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계약상의 용역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 제1항의 ‘개발세부내역 및 견적서’에서는 개발 세부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수요자에게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 개수, 제공 방법(이메일 또는 실물 교부 등), 중간결과물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회신 기한 등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수요자의 의견 회신이 늦어져 용역의 완료가 지체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본문이나 별첨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에 추가해도 좋다.

**예시**

- 공급자가 제공한 중간결과물에 대해 수요자가 [ ]일 이내에 의견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된 기간은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2항의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내역과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제6조  
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매우 중요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수요자가 용역의 범위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구두를 통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잦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말을 믿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로 용역을 수행했지만 수요자는 변경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용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제7조  
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매우 중요

- ① 공급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 ②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③ 수요자는 검사 결과 최종결과물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이를 자체 없이 수행하고 수요자에게 결과물을 납품해 다시 수요자의 검사를 받는다.
  2.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합의해 수요자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한다.

- 용역의 완료검사(검수)를 마쳐야 공급자의 용역이행의무가 종료된다. 공급자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17조의 통지방식으로 반드시 완료검사를 요청한다는 근거를 남기고,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통과했다는 의사도 제17조의 통지방식으로 전달 받아야 한다.
- 제1항은 “최종결과물에 대한 완료검사”의 뜻을 명기해 요청하라는 규정이다.
- 제2항의 검사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즉, 7일이나 10일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3항은 검사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규정이다.

**제8조  
지식재산권 귀속 등**

매우 중요

- ①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 ③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본 계약 제5조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최종결과물을 제외한 스케치, 렌더링 등)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수요자가 디자인 시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중간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때에는 비용 지급을 포함해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 이 역시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이므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제1항은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임을 선언한 규정이다.
- 제2항을 통해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때에 수요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했으므로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지식재산권이 공급자에게 있음을 유념한다.

- 제3항은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고, 그러한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추가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갖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용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제3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예시**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제9조  
손해배상**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② 제7조에 의한 완료검사 후 최종결과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 제2항은 최종결과물이 인도되고 완료검사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더 이상 공급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이후에 최종결과물에 발생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라는 취지이다.
- 제3항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손해배상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제출하라는 취지의 규정인데,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손해액의 증명이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다음 예시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예시**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사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즉,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용역 이행을 대신하도록 할 수 없다.

**제11조  
비밀의 유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한 날로부터 ( )개월/년 이후부터는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 제1항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비밀에 대한 유지 의무를 선언한 규정이다.
- 제2항은 공급자가 결과물을 실적 증명 목적으로 공개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와 합의한 비밀유지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수요자의 공개 후에 공급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요자의 공개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제3항은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가 계약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속적으로 유효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비밀유지 의무를 제한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예시**

③ 제1항의 이행의무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 3년간 존속한다.

- 제3항 후단의 손해배상 부분은 제10조 제3항에 대한 설명과 같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명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후단 부분만 변경하는 것임)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금 0000원을 배상한다.

**제12조  
자료의 제공 및  
반환**

-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수요자가 제공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요자의 의무와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잘 보관하고 용역이 종료되면 이를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공급자의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다.
- 계약 후 디자인 과정에서 수요자가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연해 용역수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용역수행이 지연되더라도 공급자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전달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자료전달 지연 사실 및 그로 인한 용역수행 지연을 수요자에게 명백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해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해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④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용역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중지로 인해 공급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해 지급한다.

- 일반적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규정이다. 특별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추가하고 싶다면 당사자간 협의해 추가할 수 있다.
- 제1항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독촉(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제2항은 계약이행에 대한 최고 후 14일이 지나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14일의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지 또는 해제 날짜가 명확해지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시기도 명확해진다.
- 제3항은 해제,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역시 제9조 제3항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제9조 제3항의 설명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고[예시1], 기수령한 계약금액 또는 잔여 계약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할 수도 있다[예시2].

**예시 1**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예시 2**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귀책 주체별로 수요자는 제3조에 의한 계약금액 중 잔여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공급자는 기수령한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14조  
지체상금**

- 제4항은 수요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용역수행이 중단 또는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한 규정이다. 첫 부분은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와 같은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요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공급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기성고에 비례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 이와 달리 공급자가 계약금액을 받고 싶다면 수요자와 협의해 수정하면 된다.

-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수요자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한 경우: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용역 이행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 계약기간을 경과해 용역을 완료한 경우: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에서 지체상금 비율 1.25/1000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이다. 이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지체상금의 한도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예컨대 계약금액이 1억 원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에서 10일간 지체한 경우 위 표준계약서 조항대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지체일수 10일 × 계약금액 1억 원 × 1.25/1,000 = 1,250,000원]
- 제2항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공급자는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제3항은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항이다.

### 제15조 불가항력

수요자와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 제16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 3항에 의해 설치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 제기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다.

- 모든 분쟁은 합의 아니면 소송에 의해 해결된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여의치 않은 경우 그 해결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은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다.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쌍방의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비용, 시간,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 경제적이므로 적극 권장한다. 분쟁 발생 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가장 먼저 거치고 싶다면 제1항의 끝 부분을 “거칠 수 있다”에서 “거친다”로 변경하면 된다.
- 제2항에서 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소를 제기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에서는 소 제기자의 편의를 위해 소 제기자와 상대방 모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 제17조 통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이를 통지해야 한다.
-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 제1항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알림, 요구, 요청, 의사전달 등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 제2항은 위와 같은 통지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고, 주소 변경도 통지하라는 조항이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입게 되는 불이익은 제3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다. 우편으로 통지할 경우 추후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날짜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효력은 없다.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따져보라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답장을 해야 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계약금액의 지급을 독촉할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의 강한 의지를 인지하고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는

것을 기피함으로써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이 회신하는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 그러나 모든 통지를 우편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 예시

-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3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다만, 제2항을 위 예시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항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 예시

-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 이메일, 휴대전화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 상대방과 교환한 구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 제18조 상호합의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해 정하기로 한다.
-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 제1항은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기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하라는 조항이다. 계약 용어에 ‘합의’와 ‘협의’가 있는데, 전자는 의사의 일치에 이르러야 함을 일컫고, 후자는 의논만 하면 충분하고 의사의 일치에 이르지 않아도 됨을 일컫는다. ‘협의’라고 규정하면 권리가 의논만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 제2항은 혹시 다른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 제19조 기타

- ①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또는 서명) 날인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② 본 계약에 수반한 합의서, 문서 등 모든 첨부 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별도의 합의서는 본 계약에 우선한다.

-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용역과 관련해 별도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제2항은 이때 이 계약과 별도 합의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합의(계약)가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했다고 판단하므로 여기에 우선적인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 착으로 표지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이 조 제3항에 추가할 수 있음은 표지 부분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 멀티미디어 용역 표준계약서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멀티미디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하‘수요자’)가 ○○○(이하‘공급자’)에게 발주한 “○○디자인 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해 인도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관련법을 따른다.  
 ① 디자인 관련용어: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적용한다.

- ② 기타 용어: 상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에 해석이 다를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제3조 계약금액**  
**매우 중요**

① 본 계약에 의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 선금금: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도금(필요시): [    ]완성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잔금: 최종결과물 검수 후 [    ]일 이내, 금[    ]원(₩00,0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최종결과물: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상의 (    )을 특정하며, 잔금지급, 완료검사 및 인수, 지식재산권 귀속, 실적증명 목적으로의 사용 등의 기준이 됨.

-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④ 본 계약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참고해 정한다.  
 ⑤ 제4항에 명시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상의 비용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                    )가 있을 경우, 그 산정기준은 (                    )을 참고한다.

- 제1항은 계약금액을 기재한 조항이다. 숫자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2항은 계약금액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기재한 것인데, 이는 예시이므로 당사자들이 협의해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현금지급, 계좌이체, 어음교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제19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독촉하는 것이 좋다. 통상 잔금은 최종결과물 검수(완료검사)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잔금을 지급 받으면 제8조에 따라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귀속·양도됨을 유념한다.

- 제3항의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는 연 6%다. 이보다 고율의 지연이자를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예시**

③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에게 제②항의 지급기한을 초과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 산정에 관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은 좋은 참고가 된다.
- 제4항의 위치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둘 수 있다. 수요자가 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데 대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예시**

④ 수요자가 제②항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가 지급을 지연한 때부터 지급을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조 비용정산**

**매우 중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하며, 공급자는 합당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비용정산해 청구한다.

비용 정산 별도 청구 사항 (※해당  안에 )

- 모형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제3자 창작물 사용료,
- 스튜디오 사용료,  모델료,  기타(                    )

-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다. 제3조의 계약금액은 순수한 디자인 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역 수행 중 모형 제작, 샘플 제작, 이미지 대여, 사진 촬영, 소품, 인쇄, 출장 등과 관련한 비용은 디자인 비용 외에 수요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4조는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수요자는 당초 약정한 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의 수행을 요구하고 이를 기존 계약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제3조의 계약금액이 적용되는 아래 제5조의 용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내용)도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내용)를 나열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부분에 “등”을 삽입함으로써 나열하는 것 외에도 비용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
- 비용산출의 기준도 미리 정해놓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예시**

▪ 제4조(비용정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외에 공급자의 용역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출장 여비, 인쇄비 등)은 정산해 별도로 청구한다. 단, 비용을 산정할 때 모형 제작비, 샘플 제작비, 이미지 대여비, 사진 촬영비, 소품비, 인쇄비의 경우는 외주비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장 여비 및 기타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매우 중요

- ①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결과물 (※해당 <input type="checkbox"/> 안에 ✓)	
디자인 기획	<input type="checkbox"/> 시장조사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기획방향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아이디어 발굴	<input type="checkbox"/> 아이디어 스케치, <input type="checkbox"/> 아이디어 PT, <input type="checkbox"/> 기타( )
디자인 제작	<input type="checkbox"/> 시안제작 ( )종, <input type="checkbox"/> 세부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이드 제작	<input type="checkbox"/> 이미지 구축, <input type="checkbox"/> 스타일링 가이드,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타 사항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분석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사용성 평가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용역의 범위와 결과물은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이는 단순하게 몇 줄로 작성할 일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재 내용이 상세할수록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공급자가 수행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계약상의 용역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 제1항의 ‘개발세부내역 및 견적서’에서는 개발 세부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수요자에게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 개수, 제공 방법(이메일 또는 실물 교부 등), 중간결과물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회신 기한 등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수요자의 의견 회신이 늦어져 용역의 완료가 지체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본문이나 별첨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에 추가해도 좋다.

**예시**

- 공급자가 제공한 중간결과물에 대해 수요자가 [ ]일 이내에 의견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된 기간은 제14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2항의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내역과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좋다.

**제6조  
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매우 중요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수요자가 용역의 범위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구두를 통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잦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말을 믿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로 용역을 수행했지만 수요자는 변경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용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 제2항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 용역량이 증가한 경우 추가계약금액을 청구하라는 규정이다.
- 만약 수요자가 당사자간 서면 작성을 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수요자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금액도 산정해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수요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나중에 용역의 범위, 계약금액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7조  
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매우 중요

- ① 공급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 ②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③ 수요자는 검사 결과 최종결과물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이를 자체 없이 수행하고 수요자에게 결과물을 납품해 다시 수요자의 검사를 받는다.
  2.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합의해 수요자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한다.

- 용역의 완료검사(검수)를 마쳐야 공급자의 용역이행의무가 종료된다. 공급자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완료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반드시 완료검사를 요청한다는 근거를 남기고,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통과했다는 의사도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전달 받아야 한다.
- 제1항은 “최종결과물에 대한 완료검사”의 뜻을 명기해 요청하라는 규정이다.
- 제2항의 검사기간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즉, 7일이나 10일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3항은 검사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규정이다.

**제8조  
지식재산권 귀속 등**

매우 중요

- ①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 ③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본 계약 제5조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최종결과물을 제외한 스케치, 렌더링 등)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수요자가 디자인 시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중간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때에는 비용 지급을 포함해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 이 역시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이므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제1항은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츠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임을 선언한 규정이다.
- 제2항을 통해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때에 수요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했으므로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지식재산권이 공급자에게 있음을 유념한다.

- 제3항은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있고, 그러한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추가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갖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용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제3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예시**

②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제9조  
손해배상**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② 제7조에 의한 완료검사 후 최종결과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 제2항은 최종결과물이 인도되고 완료검사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더 이상 공급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이후에 최종결과물에 발생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라는 취지이다.
- 제3항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손해배상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제출하라는 취지의 규정인데,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손해액의 증명이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다음 예시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예시**

③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사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즉,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용역 이행을 대신하도록 할 수 없다.

**제11조  
비밀의 유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한 날로부터 ( )개월/년 이후부터는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결과물을 실적 증명 목적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 제1항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비밀에 대한 유지 의무를 선언한 규정이다.
- 제2항은 공급자가 결과물을 실적 증명 목적으로 공개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와 합의한 비밀유지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수요자의 공개 후에 공급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요자의 공개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제3항은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가 계약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속적으로 유효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비밀유지 의무를 제한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예시**

③ 제1항의 이행의무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 3년간 존속한다.

- 제3항 후단의 손해배상 부분은 제9조 제3항에 대한 설명과 같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아예 손해배상액을 명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후단 부분만 변경하는 것임)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금 0000원을 배상한다.

**제12조  
자료의 제공 및  
반환**

-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수요자가 제공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요자의 의무와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잘 보관하고 용역이 종료되면 이를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공급자의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다.
- 계약 후 디자인 과정에서 수요자가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연해 용역수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용역수행이 지연되더라도 공급자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전달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의 통지방법으로 자료전달 지연 사실 및 그로 인한 용역수행 지연을 수요자에게 명백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해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해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④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용역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중지로 인해 공급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해 지급한다.

- 일반적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규정이다. 특별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추가하고 싶다면 당사자간 협의해 추가할 수 있다.
- 제1항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독촉(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제2항은 계약이행에 대한 최고 후 14일이 지나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14일의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지 또는 해제 날짜가 명확해지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시기도 명확해진다.
- 제3항은 해제,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역시 제9조 제3항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제9조 제3항의 설명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고[예시1], 기수령한 계약금액 또는 잔여 계약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할 수도 있다[예시2].

**예시 1**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증명된 손해액이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보다 적은 경우에도 손해액은 금 000원(또는 계약금액의 50%)으로 정한다.]

**예시 2**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귀책 주체별로 수요자는 제3조에 의한 계약금액 중 잔여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공급자는 기수령한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 제4항은 수요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용역수행이 중단 또는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한 규정이다. 첫 부분은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와 같은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요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공급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기성고에 비례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 이와 달리 공급자가 계약금액을 받고 싶다면 수요자와 협의해 수정하면 된다.

**제14조  
지체상금**

-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수요자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한 경우: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용역 이행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 계약기간을 경과해 용역을 완료한 경우: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에서 지체상금 비율 1.25/1000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이다. 이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지체상금의 한도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예컨대 계약금액이 1억 원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에서 10일간 지체한 경우 위 표준계약서 조항대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지체일수 10일 × 계약금액 1억 원 × 1.25/1,000 = 1,250,000원]
- 제2항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공급자는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제3항은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항이다.

**제15조  
불가항력**

수요자와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제16조  
보증기간**

- ① 무상하자보증기간은 최종결과물의 완료검사 합격 후 12개월 이내로 한다.
- ② 무상하자보증기간 동안 최종결과물의 규격 또는 개발 범위를 초과한 성능의 개선 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개발은 상호합의 하에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한다.
- ③ 무상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운영관리(유상 유지계약금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무상하자보증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에서 12개월은 통상적인 것이긴 하나, 용역의 성질, 기타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때 보수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합의해야 한다.
- 제2항은 무상하자보증의 범위를 초과하는 개선 또는 개발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추가 보수를 부담해야 함을 선언한 규정이다.

**제17조  
운영관리**

-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수요자 소유의 최종결과물의 운영관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탁한다.
- ② 운영 관리에 대한 공급자의 비용은 월 임금 원정(W ,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 ③ 위탁운영관리 범위는 별도로 위탁운영 업무표를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다.

- 제16조의 무상하자보증기간 경과 후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 제2항에서 보수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면 좋다.
- 예시**

② 운영 관리에 대한 공급자의 보수는 월 임금 원정(W ,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공급자는 해당 월의 보수를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하고, 수요자는 청구월의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3항의 위탁운영관리 범위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 3항에 의해 설치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 제기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다.

- 모든 분쟁은 합의 아니면 소송에 의해 해결된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해결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 제1항은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다.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쌍방의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비용, 시간,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 경제적이므로 적극 권장한다. 분쟁 발생 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가장 먼저 거치고 싶다면 제1항의 끝 부분을 “거칠 수 있다”에서 “거친다”로 변경하면 된다.

- 제2항에서 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소를 제기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에서는 소 제기자의 편의를 위해 소 제기자와 상대방 모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제19조  
통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이를 통지해야 한다.
-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 제1항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알림, 요구, 요청, 의사전달 등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 제2항은 위와 같은 통지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고, 주소 변경도 통지하라는 조항이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입게 되는 불이익은 제3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다. 우편으로 통지할 경우 추후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날짜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효력은 없다.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따져보라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답장을 해야 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계약금액의 지급을 독촉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의 강한 의지를 인지하고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는 것을 기피함으로써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이 회신하는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 그러나 모든 통지를 우편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 예시**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3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다만, 제2항을 위 예시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항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좋다.

- 예시**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상대방 주소지, 이메일, 휴대전화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구 주소, 상대방과 교환한 구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통지한 경우 통지의 효력은 통지 서면을 발송할 때 발생한다.

**제20조**  
**상호합의**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해 정하기로 한다.
-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 제1항은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기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하라는 조항이다. 계약 용어에 ‘합의’와 ‘협의’가 있는데, 전자는 의사의 일치에 이르러야 함을 일컫고, 후자는 의논만 하면 충분하고 의사의 일치에 이르지 않아도 됨을 일컫는다. ‘협의’라고 규정하면 권리자가 의논만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 제2항은 혹시 다른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제21조**  
**기타**

- ①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또는 서명) 날인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② 본 계약에 수반한 합의서, 문서 등 모든 첨부 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별도의 합의서는 본 계약에 우선한다.

-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용역과 관련해 별도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제2항은 이때 이 계약과 별도 합의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합의(계약)가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했다고 판단하므로 여기에 우선적인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 착오로 표지 기재와 본문의 계약조건에 충돌이 있는 경우(즉,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이 조 제3항에 추가할 수 있음은 표지 부분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2020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  
**2020 KIDP Guide for Standard Design Service Agreement**

발행일 2020년 7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780-2114 (소관부서 : 산업육성실)  
FAX 031-780-2040  
웹사이트 [www.kidp.or.kr](http://www.kidp.or.kr)  
[drights.kidp.or.kr](http://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2020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관련 의견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